

2025년 제3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

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.

1. 모집분야 : 아이돌보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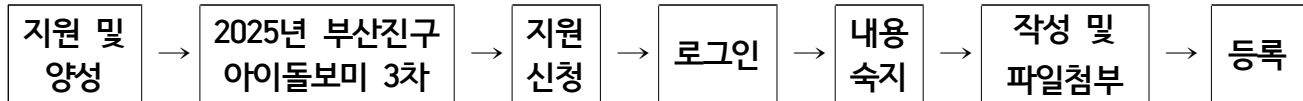
2. 응시자격

- 1)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
- 2) 아이돌보미 양성교육*)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자격증(양성교육 감면대상)**) 소지자
 - *)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: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 이수
 - **) 관련 자격증(양성교육 감면대상) :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 제1~4호에 해당자
- 3) 하원시간대 16:00~20:00 **활동 필수로 가능한 자**
- 4) 합격자 발표 이후 **즉시 활동 가능한 자**
- 5)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우대사항: **영아 돌봄 가능한 자** / 하원시간대 **16:00-20:00 활동 가능한 자** /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

3. 모집개요

- 1) 모집기간 : 2025. 6. 23.(월) ~ 2025. 7. 15.(화)까지
- 2) 모집인원 : 00여명
- 3)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(홈페이지 주소: <https://care.idolbom.go.kr>)

※ 온라인신청방법



★ 파일첨부 위치 : 추가 제출 서류 첨부

4) 제출서류 ★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허위작성 및 연계거부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★

-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(첨부파일 작성)
- ② 자기소개서 1부 (첨부파일 작성)
-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(첨부파일 작성)
- ④ 주민등록등본 1부 (발급일자 3개월 이내)
- 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(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)
- ⑥ 관련 자격증(양성교육 감면대상) 사본 1부 (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
- ⑦ 경력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⑧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※ 관련 자격증(양성교육 감면대상)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: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(1~3급)
- 2)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: 유치원 정교사(1급·2급)·준교사
- 3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: 정교사(1급·2급), 준교사, 전문상담교사(1급·2급), 사서교사(1급·2급), 실기교사, 보건교사(1급·2급) 및 영양교사(1급·2급)
- 4)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: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및 간호사

4. 전형방법

- 1) 1차 서류심사 : 2025. 7. 17.(목) 예정
- 2) 2차 인·적성 검사 : 2025. 7. 21.(월) 예정
*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일정 통보 예정이며, 일정 변경 불가
- 3) 3차 면접심사 : 2025. 7. 22.(화) ~ 7. 24.(목) 예정
* 서류합격자의 한하여 일정 통보 예정이며, 일정 변경 불가
- 4) 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
- 합격자발표 예정일 : 2025. 7. 25.(금) 예정
*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.

5. 신규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교육

- 1) 대상자 : 최종합격자
- 2) 일시 : 2025. 8. 4.(월) 예정
- 3) 장소 :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
- 4) 내용 :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및 보수교육, 현장오리엔테이션 안내
* 보수교육 대상자 : 관련 자격증(양성교육 감면대상) 소지자 중 합격자에 한함

6. 아이돌보미 직무 (겸업불가)

-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
- 1) 시간제 돌봄서비스(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)
 -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, 학교, 학원 등·하원지도, 안전·신변보호 처리, 준비물 보조 등(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)
- 2)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(만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)
 -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 등)

7. 아이돌보미 보수

- 1) 활동수당 : 시간당 10,590원
 - 주휴수당, 야간·휴일 근로,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
 - ★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(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) 주휴일, 연차유급휴가, 퇴직금 등 제외
- 2)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: 40시간(법정근무시간) + 12시간(연장·휴일·야간근로)
- 3) 4대보험 가입 (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자)

8. 유의사항

- 1) 아동 기준,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
- 2) 신청서에 기재 착오,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- 3)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4) 상기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.